

『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과다한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생산성 저하, 온라인 행정서비스 확대 등 행정변화에 대응하고, 생활환경·여건의 유사성이 높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신평1동과 신평2동을 신평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(통합)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신평1동과 신평2동의 행정구역 조정(통합) 및 행정동의 명칭 변경
 - [현행] 신평1동, 신평2동 → [개정] 신평동
- 행정구역 조정(통합) 후 신평2동 사무소를 신평동 사무소 소재지로 함
 - 신평동 : 경상북도 구미시 신비로7길 9(신평동)
- 신평1동과 신평2동의 관할구역을 신평동의 관할구역으로 조정(통합)(안 별표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 2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신평1동과 신평2동을 조정(통합)하여 행정동 명칭을 ‘신평동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주민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적정한 동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며,
- 인구 및 면적이 과소한 동에 각각의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나타나는 행정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, 생활 여건·환경이 유사한 행정구역의 통폐합을 통해 비용절감, 주민편의증진, 행정능률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동 통합 및 청사 위치 홍보, 각종 공부 및 표지판 정비, 행정조직의 신속한 정비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